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2002. 7. .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2002.9.3. ~ 2002.9.9)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9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2002. 9. 3 (화) ~ 2002. 9. 9 (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한 대 운 [간사] 박 지 위 [위원] 김 순 금, 남 두 회 신 동 선, 윤 동 현 윤 정 용, 이 종 일 이 천 규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 영 위원회실	김건재	서창석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02. 7. 9.(화) ~ 8.17.(토)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수합	
	~ 7.10.(수)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7.11.(목)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8.19.(월) ~ 9. 2.(월)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02. 9. 3.(화) ~ 9. 9.(월)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종료 선언			
02. 9.10.(화) ~ 9.18.(수)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의회사무국 2002년도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보고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2002. 7. 10.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提 案 理 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主 要 骨 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2002. 9. 3 ~ 2002. 9. 9)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11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關 係 法 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2. 監査期間

2002. 9. 3 (화) ~ 2002. 9. 9 (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 동사무소 (24개동)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 위원회	[위원장] 신 봉 현 [간 사] 오 윤 수 [위 원] 김 광 섭, 김 평 전 김 호 철, 고 일 재 남 두 희, 박 지 위 유 남 철, 유 응 봉 정 형 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행정건설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박관수	서정길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2002.7. 9 (화) ~ 8.17 (토)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수합	
	7.10 (수) ~ 7.11 (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7.11 (목) ~ 7.12 (금)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8.19 (월) ~ 8.31 (토)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2002.9. 3 (화)	○ 위원장의 감사선언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인사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담당관(친절봉사추진반 포함) 감사 ○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행정관리국장 인사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총무과 감사 - 주민자치과 감사 - 문화체육과(월드컵추진반 포함) 감사 - 민원봉사과 감사	
	2002.9. 4 (수)	○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재정국장 인사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기획예산과 감사 - 재 무 과 감사 - 세 무 1과 감사 - 세 무 2과 감사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2002.9. 5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건설교통국장 인사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건설관리과 감사 - 토 목 과 감사 - 치수방재과 감사 - 교통행정과 감사 - 교통지도과 감사 	
	2002.9. 6 (금) ~ 9. 7 (토)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대상 동사무소 선정 후, 감사)	
	2002.9. 9 (월)	○ 감사결과 강령및 감사종료선언	
감처 사리 결단 과계	2002.9.10 (화) ~ 9.19 (목)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처리및 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업무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2002. 7. .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2. 主要骨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2002.9.3 ~ 2002.9.9)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12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2002. 9. 3 (화) ~ 2002. 9. 9 (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 동사무소 (24개동)
- 마포개발공사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담위원	사무직원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 이 매 숙 [간 사] 정 해 원 [위 원] 김 순 금, 박 영 길 송 태 섭, 신 동 선 윤 동 현, 윤 정 용 이 종 일, 이 천 규 한 대 운, 한 수 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 건 소, 동사무소, 마포개발 공사	복지도시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마포개발 공사	김건재	서창석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02. 7. 9.(월) ~ 8. 17.(토)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수합		
	7. 10.(수)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7. 11.(목)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8. 19.(월) ~ 9. 2.(월)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02. 9. 3.(화)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생활복지국장인사 및 소속간부 소개 - 증인선서 - 사회복지과 감사 - 산업위생과 감사	
'02. 9. 4.(수)		◦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환경과 감사 - 청소행정과 감사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계	'02.9. 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실시 - 도시관리국장인사및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주택과 감사 - 도시개발과 감사 - 건축과 감사 - 지적과 감사 	
	'02.9. 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행정사무감사실시 - 보건소장인사및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보건행정과 감사 - 보건지도과 감사 - 의약과 감사 	
	'02.9. 9.(월)	○ 마포개발공사	
감 사 리 결 단 과 계	'02. 9.10.(화) ~ 9.18.(수)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처리및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각과별, 동사무소, 마포개발공사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